## 영등포구의회 제 195회 제1차 정례회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討報告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6. 6. 21.

社會建設委員會專門委員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討報告

### 1. 경 과

의안 제147호로 2016년 6월 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과「국민건강보험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변경된 법조항을 수정하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· 운용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저소득주민으로 변경 (안 제명, 제1조, 제2조제1호, 제3조)

- 나. 저소득주민의 정의(안 제2조제1호)
- 다. 지원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(안 제6조제2항)

### 4. 참고사항

#### 가. 관련근거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(급여의 종류)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69조(보험료)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8조(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- 다. 입법예고 (2016. 4. 28. ~ 5. 18) : 의견 없음.

### 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과「국민건강보험법」의 개정으로 맞춤형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#### O 주요 내용을 보면

-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저소득주민으로 용어의 명칭을 변경하고 저소득주민의 정의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1)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인 자로 규정함.
-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시기를 지원 실시로 변경 하여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토록 신설함.
- 본 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료 지급방법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 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.

<sup>1)</sup>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(근로·사업·재산·이전 소득을 합산한 소득)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,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 소득

# 관 련 법 령

#### ■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

제7조(급여의 종류)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생계급여
- 2. 주거급여
- 3. 의료급여
- 4. 교육급여
- 5. 해산급여(解産給與)
- 6. 장제급여(葬祭給與)
- 7. 자활급여
-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4.12.30.>
-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(이하 "차상위자"라 한다)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삭제 <2014.12.30.>

[전문개정 2012.2.1.]

#### ■『국민건강보험법』

**제69조(보험료)**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

- 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. 다만,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. 다만,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.
-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- 1. 보수월액보험료: <u>제70조</u>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<u>제73조제1항</u>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
- 2. 소득월액보험료: <u>제71조</u>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<u>제73조제1항</u>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
-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,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#### ■『노인장기요양보험법』

**제8조(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)**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.

-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에 따른 보험료(이하 이 조에서 "건강보험료"라 한다)와 통합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2.31.>
-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.